

#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56
----------	------

2020. 4. 24.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4. 3. 서울특별시청 제출
- 회부일자 : 2020. 4. 8.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20.4.24. 상정·의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류 훈 주택건축본부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생의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 나.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청년월세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년~'22년 ※ 3년간 운영성과를 토대로 지속추진 여부 검토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청년1인 가구(만19세~만39세)
- 지원조건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주택 거주 무주택자
  - (지원제외)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등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지원(최대 10개월, 200만 원) ※ 생애 1회 지원
  - 3년간, 4만 5천 명 지원 ⇨ '20년 5천 명, '21년 20천 명, '22년 20천 명
-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월세 계좌이체 증서에 따라 지급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 6개월('20년 7월~'22년 12월)
- 위탁사무 :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 ① 상담 및 신청접수 : 사업안내, 신청내용 확인 및 오류 보완
    - 신청기간(2주)중 1일 전화문의 1천여 건, 접수 2만여 건 예상
  - ②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
  - ③ 지원대상자 기본 및 급여정보 관리
    - 주소, 임대차계약 변경사항, 유사사업 중복수혜 등 자격여건 확인
  - ④ 통계관리 및 사업평가(모니터링 등), 홍보 지원
  - ⑤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주거정책'과 연계 모색
- 운영인력 : 행정인력 5명 ※ 상담요원: 신청기간 10여 명 한시 운영
- 필요예산 : 100백만 원('20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다수의 청년대상 사업으로 전화상담, 신청서류 검토, 지원자 관리 등 일부 사무를 전문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고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잠재적인 정책대상 20만여 명, '20년 신청 예상인원 2만여 명으로 신청민원 폭주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참여자의 편의 도모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동의안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청년주거복지 관련사업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운영업무를 사무형<sup>1)</sup>으로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사전절차 이행 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4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1)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의 유형은 '시설형'과 '사무형'으로 구분되며, '사무형'은 서울시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자기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유형임.

## □ 위탁배경 및 주요내용

-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금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중 상담 및 신청접수,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통계 및 성과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까지 만 2년 6개월임(검토보고서 붙임1 참고).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민간위탁 추진개요〉

- ▶ 위탁기간 : ‘20.7월~’22.12 (2년 6개월)
- ▶ 조직운영 : 1팀장, 직원 4명, 단기 사무보조원 운영 10명
- ▶ 사업예산 : 100백만 원(6개월 기준) ※ 중앙주거복지센터 인건비기준 준용
- ▶ 위탁사무
  - ① 지원신청 및 선정지원 : 신청접수, 상담, 신청내용 대사 오류확인 및 보완조치, 통합조사 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
  - ② 지원자 기본 및 급여정보 관리
    - 주소, 임대계약 변경사항, 유사사업 중복수혜 등의 자격상실 여부 등
    - 매월 급여이체증 확인 및 지급조서안 작성
  - ③ 통계관리 및 사업평가(모니터링 등), 사업홍보 지원

-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주거기본법」 제15조와 「서울특별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sup>2)</sup> 중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총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출산 등 삶의 선택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검토보고서 붙임2 참고).
  - 청년월세의 지원 규모는 2020년 5천명, 2021년과 2022년 각 2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며<sup>3)</sup>, 지원 방식은 요건에 맞는 청년들이 온 라인 시스템인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민법」 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만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2022년 이후는 지원실적, 효과 등 평가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임.

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로 지급받게 됨.

###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지원 제외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반재산 1억원 초과자, 자동차 2,500만원 초과자, 청년수당 및 공공주거정책사업 참여자 등

○ 지원규모 : '20년 5천명, '21년 20천명, 단계적으로 지원대상 확대 예정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지원방법 : 온라인시스템,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20예산 : 10,770백만 원 (지원금10,000, 시스템 구축비 760 등)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등이 낮은 순으로 1~3순위 선정 후

- 1순위 2천만 원이하, 2순위 5천만 원이하, 3순위 1억 원이하

※ 우선순위 기준금액 산정항목 : 임차보증금 + 자동차시가표준액

- 이 사업은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숙의를 통해 공론화 되었으며, 같은 해 6월, 청년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이 제안되었고, 2020년 청년자율예산<sup>4)</sup>으로 편성되었음<sup>5)</sup>.

### 〈추진경위〉

- ▶ 서울청년시민회의 도시주거분과 정책숙의 공론화(청년청, '19.4.1~6.30.)
- ▶ 서울청년시민회의 도시/주거 분과 정책제안('19.6.29.~6.30.)
  -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사업 최초 제안
- ▶ 청년주거정책 간담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간담회 등('19.7.9.~8.20.)
- ▶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청년자율예산제 운영에 따른 청년층 사업추진 요구 [청년청-12630호('19.9.27.)]
- ▶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계획('19.10.30. 시장방침 제208호)
- ▶ 자치구 및 전문가, 청년단체 정책자문회의 운영('20. 2~3월)
- ▶ (가칭)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20. 2.20)

4)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청년 당사자 주도의 독립적 예산 편성절차로서, 2020년 총 278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고, 예산금액과 편성절차는 '서울청년시민회의'의 논의에 따라 조정·결정됨.

5) 2020년 예산은 107억 7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월세지원금으로 1인당 200만원씩 5천명 분인 100억원, 온라인시스템 구축비 7억 6천만원 등임.

- 청년월세를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 금년 초 주택건축본부 내에 ‘청년월세지원팀’이 신설<sup>6)</sup>되었는데 정원은 6명이지만 이 중 2명은 민간위탁 시까지의 탄력정원으로,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음<sup>7)</sup>.

이는 서울시가 청년월세 사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단일 사업에 투입해야할 행정비용이 크고, 지원자 모집 전후 집중될 사무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이 어려워 민간위탁을 통해 업무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됨<sup>8)</sup>.

**<서울시와 민간위탁 업체 간 역할분장계획> ( 출처: 주택건축본부)**

구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인력영역	정원 4명(팀장1, 직원3)+탄력정원 2명	정원 5명(팀장 1, 팀원 4) (단기)사무 보조원 10명 이내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기반마련 및 정책결정·집행</li> <li>-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집행</li> <li>- 신청관리 시스템 구축</li> <li>- 자문·심의위원회 구성·운영</li> <li>• 관련 기관 협의, 사업광고, 평가</li> <li>• 기타 이의신청 심의, 정보공개 처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문의 대응 및 관련 정보 관리</li> <li>- 상담, 안내, 대상여부 컨설팅</li> <li>- 지원 대상자 관리(주소, 임대차정보 등)</li> <li>- 통계관리 및 설문조사 실시 등</li> <li>• 시스템 운영, 사업집행 대행</li> </ul>
업무 처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월세지원사업 신청 공고</li> <li>③ 유관기관(부서) 통합조사 의뢰</li> <li>- 소득, 자산,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li> <li>⑥ 이의신청 건 ‘심의위원회’ 운영</li> <li>⑦ 지원대상 선정 공고(시스템)</li> <li>⑩ 급여지급 및 안내(시금고 협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신청 접수 및 검토 보완</li> <li>- 급여청구 내용 등 오류 대사 작업</li> <li>④ 조사결과 확인 부적격자 안내(문자 등)</li> <li>⑤ 이의신청서 접수</li> <li>⑧ 급여청구 안내 및 접수</li> <li>⑨ 매월 계좌이체 확인 후 지급조서 작성</li> </ul>

6) 주택정책과(+6) : 행정5급(+1), 사회복지6급(+1), 행정7급(+3), 전산7급(+1)

※ 행정7급 2명은 탄력정원으로 민간위탁 완료 시 감원배정 예정임(조직담당관 유선 확인)

\*출처 - 정원배정(2020.1.10.자 - 주택건축본부) 알림 (조직담당관-341호, 2020.1.9.)

- 7) 금년 초의 인력배치는 조직담당관에서 청년청의 ‘청년수당’ 사업을 참고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2019년 검토 당시 ‘청년수당’을 위하여 청년청 내 전담인력 4명, 민간위탁기관인 ‘청년활동지원센터(현재 총32명)’ 내 전담인력 5명이 배치되어 있었음.

2020년에는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청년수당 관련 오리엔테이션 업무만 담당하고, 문의답변과 상담은 ‘청년수당 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음. 1년 기한의 용역방식(용역비 3억원)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상시 인원은 4~6인, 모집 전후기간에는 최대 10인이 근무함(‘2020년 청년수당 콜센터 운영계획’, 청년청 2020.1)

- 8) 참고로 ‘청년수당’ 사업의 경우 2019년에 총 7천명을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한 바 있는데, 모집신청 시기에 1일 평균 1천 건 이상의 전화문의가 있었음.

## □ 주요 검토사항

###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제3호의 ‘청년가구 임대료 보조사업’의 일환이며, 3년간 지원자 4만5천명, 잠정적 수요 청년층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 대사 오류확인, 상담, 지원자 소득·임대차 정보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사무의 성격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또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됨(검토보고서 붙임3 참고).

### “별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신규로 민간에 위탁하는 대신, 청년수당을 담당하는 기존 위탁기관이나 청년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먼저 2016년 서울시에 최초 도입된 청년수당은 금년부터 상담업무는 ‘청년수당 콜센터’(이하 ‘콜센터’)에서, 그 외 사무는 청년청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콜센터를 통한 청년월세 상담업무 수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음(검토보고서 붙임4 참고).
- 콜센터에서 청년월세 상담업무를 담당할 경우, 청년수당과 청년월세 지원자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임차보증금 및 월세, 자동차시가, 일반재산 등을 확인·대조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할 별도 기구가 필요하므로 콜센터 활용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콜센터는 1년 기한의 용역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 까닭에 개인

정보를 보유·관리해야하는 사무의 특성상 잦은 수행업체의 변경은 적합지 못하다고 판단됨.

사 업 명		청년월세지원 사업	청년수당 사업
지 원 자 선 정	선정 조건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60만 원 이하의 민간주택 월세 거주 청년	미취업청년(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 자동차시가 2,500만원 초과자, 공공 유사사업 중복수혜자 등 10여 개 항목	졸업후 2년이내인 경우, 주30시간 이상 및 3개월이상의 고용보험가입자 등 10여개 항목

- 청년의 주거복지 제반을 담당하는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청년주거’라는 유사성은 있으나, 그 대상은 청년월세 요건에 부합하는 청년을 포함한 모든 청년이며, 업무 내역에 있어서도 청년주거 전반에 대한 상담·교육·안내를 맡고 있어 대상과 업무면에서 차이가 있음. 또한 현재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는 SH공사에서 용역을 통해 위탁대행할 예정으로 개인정보 관리 측면에서 콜센터와 동일한 문제가 예상됨(검토보고서 붙임5 참고).

사업명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사업대상	○ 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	○ 일반청년
위탁사무	<p>&lt; 청년 월세 지원 사업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 및 선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 상담, 신청내용 대사 오류확인 및 보완조치 통합조사결과 안내</li> </ul> </li> <li>○ 지원자 기본 및 급여정보 관리(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 임대계약 변경사항, 유사사업 중복수혜 등 자격상실 여부 등</li> <li>- 매월 계좌이체 확인 및 지급조서 작성</li> </ul> </li> <li>○ 통계관리 및 사업평가(모니터링 등), 사업홍보, 주거 프로그램 연계 운영</li> </ul>	<p>&lt; 청년 주거복지사업 지원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자 주거권리 교육</li> <li>○ 주거정책 홍보 및 상담창구 운영</li> <li>○ 법률지원단 운영</li> <li>○ 주거상담 인력 양성</li> <li>○ 주거정책 연구 및 통합 관리 등</li> <li>○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관리</li> </ul>
운영 및 선정방법	신규 민간위탁 추진 (공개경쟁입찰)	SH 위탁대행사무 중 민간 용역 추진 (일반경쟁입찰) ※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2조(대행사업)



## □ 기타 예산 집행계획

- 금년도 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2020년 정규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음. 금번 동의안 심사 후 필요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편성할 수도 있겠으나, 소관부서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시스템 구축 및 감리용역’에서 발생한 불용액 1억4천만원<sup>9)</sup> 중 전용하여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검토보고서 붙임6 참고).

(단위: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00,000	338,764	346,044
인건비	85,000	242,664	249,944
사업비	9,000	30,000	30,000
운영비	6,000	66,100	66,100

- 참고로, 2020년 청년월세 지원금으로 편성한 100억원은,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대상자가 선정되고 내년도까지 집행이 확실한 사항이므로 이월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단위:천원)

구분	2020년(안)	2021년(안)	2022년(안)
기간제근로자	49,600 (8주*10명*1회)	128,000 (5주*4회*10명)	132,000 (5주*4회*10명)
사무관리비	60,000 (홍보, 자문, 매뉴얼 1회)	100,000 (4회)	100,000 (4회)
전산개발비	620,231	100,000 (유지관리)	100,000 (유지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0,000 (5천 명)	40,000,000 (2만 명)	40,000,000 (2만 명)
민간위탁금	100,000	338,764	346,044
계	10,829,831	40,666,764	40,678,044

9) 당초 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과업 변경이 발생함.

- **종합하면**, 이 동의안은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중 최초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토록 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로서의 적정성, 유사 업무와의 차별성, 청년월세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청년주거지원 업무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금번 민간위탁을 계기로 청년 주거지원 분야의 전문업체를 육성·발굴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시작과 함께 청년월세지원팀 내 ‘탄력정원’을 곧바로 축소시키기 보다는 수탁업체로의 업무인계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에게 ‘생애 1회 지원’만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대상자 선정 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경제에 어려움을 크게 겪는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방안, 30대 후반 청년들을 배려하는 등 연령층 전체에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sup>10)</sup>,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수혜 종료된 청년들이 주거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sup>11)</sup>.
  - 아울러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 7조의 ‘임대료 보조’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만 3년 간의 시범

10) 현재에는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1~3순위로 구분하여 해당 순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상 중임.

11)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 사업과 연계·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할 것임.

운영 후 사업의 지속 여부를 정하여 청년월세지원 사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끝으로 서울시는 청년청과 주택건축본부를 중심으로 청년주거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수요자인 청년이 각종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혼란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및 부서간 업무 협력·연계방안 마련 등이 필요해 보임.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없음

####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의견제시, 출석위원 전원찬성)

- 의견 : 다음 사항의 준수를 조건으로 동의함.
  - 유사기능을 담당하는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와의 통·폐합 방안 및 금융기관(시금고)를 활용한 방안 등을 포함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계약 조건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할 것.
  -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보다 더 강화된 주택건축본부의 관리지침을 마련·이행할 것.

####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56
----------	------

제출년월일 : 2020년 4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생의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 나.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청년월세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년~'22년 ※ 3년간 운영성과를 토대로 지속추진 여부 검토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청년1인 가구(만19세~만39세)
- 지원조건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주택 거주 무주택자
  - (지원제외)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등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지원(최대 10개월, 200만 원) ※ 생애 1회 지원
  - 3년간, 4만 5천 명 지원 ⇨ '20년 5천 명, '21년 20천 명, '22년 20천 명
- 지원방법 : 온라인 신청, 월세 계좌이체 확인 후 지급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 6개월('20년 7월~'22년 12월)
- 위탁사무 :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 ① 상담 및 신청접수 : 사업안내, 신청내용 확인 및 오류 보완
    - 신청기간(2주)중 1일 전화문의 1천여 건, 접수 2만여 건 예상
  - ②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른 지원 제외대상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
  - ③ 지원대상자 기본 및 급여정보 관리
    - 주소, 임대차계약 변경사항, 유사사업 중복수혜 등 자격여건 확인
  - ④ 통계관리 및 사업평가(모니터링 등), 홍보 지원
  - ⑤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청년주거정책'과 연계 모색
- 운영인력 : 행정인력 5명 ※ 상담요원 : 신청기간 10여명 한시 운영
- 필요예산 : 100백만 원('20년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다수의 청년대상 사업으로 전화상담, 신청서류 검토, 지원자 관리 등 일부 사무를 전문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고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및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잠재적인 정책대상 20만여 명, '20년 신청 예상인원 2만여 명으로 신청민원 폭주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참여자의 편의 도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나. 예산조치 : 예산 전용(시스템구축 집행잔액 등 사용)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08호): '19.10.30.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0. 2.20.
-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20. 3.24.
-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 및 지원 : '20년 7~8월

※ 작성자 : 주택정책과 청년월세지원팀 박경옥(☎ 2133 -7703)